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<u>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</u>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

공보담당관 형사2부장 박준영 전화 054-429-4222 보도자료 2021. 4. 5.(월)

제 목

### 친딸의 자녀를 약취한 구미 친모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시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시경위, 수시상황(제11조 제1항)
- 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(부장검사 이용균)는 친딸의 자녀를 약취하고, 친딸이 보호하던 여아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사체의 매장을 시도한 친모를 미성년자약취 및 사체은닉미수죄로 2021. 4. 5. 구속 기소 하였음
- 검찰은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보완수사 하는 등, 피의자가 출산 및 약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혐의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

##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### ① 피고인

● 피고인 : A○○(48세, 무직)

#### ② 공소사실 요지

- '18. 3. 31. ~ 4. 1.경 구미 소재 산부인과에서, 친딸인 B○○이 '18. 3. 30.
  출산한 C○○을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감【미성년자약취】
- '21. 2. 9.경 B○○의 주거지에서 여아 사체를 발견하고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한 후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,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,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옴【사체은닉미수】

### 2 수사 경과

- 2. 10. 경찰, B○○ 살인죄로 긴급체포
- 2. 26. 국립과학수사연구원(이하 '국과수'), B○○와 사망한 여아 친자 과계 불성립 경찰에 통보
- 3. 3. 국과수, 사망한 여아의 친모가 피의자라는 감정결과 회신
- 3. 10. B○○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
- 3. 11. 피의자, 미성년자약취죄로 구속
- 3. 17. 피의자 미성년자약취, 사체은닉미수죄로 구속 송치
- 3. 18. ~ 4. 4. 송치 후 보완수사(DNA 추가감정, 통화·계좌·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, 병원 진료기록 및 의약품구입 내역, 유아용품 구매내역 등 확인)
- 4. 5. 피고인 구속 기소

## 3 수사 결과

#### ① 미성년자약취 관련

- 국과수 및 대검의 각 DNA 분석 결과, 사체로 발견된 여아는 피고인의 친자이고 (정확도 99.999998%), B○○과는 동일모계이며, BB형의 혈액형인 B○○으로 부터 나올 수 없는 혈액형(AO)을 지닌 것으로 확인됨
- 임신 및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증거가 확인되었음
- 산부인과에서 피고인이 친딸의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다수 확인하였음

#### ② 사체은닉미수 관련

● 피고인 사실관계 인정

# 4 향후 계획

● 경찰과 긴밀 협조관계 유지하여 사라진 C○○의 생존 여부 등의 확인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 ☑